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배당절차 개선 등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과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 개정 등 주요 동향을 반영, '24년 제출보고서부터 적용
- '24년 제출대상 확대(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비하여, 사전 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차질 없는 준비 지원

1. 제도 개요 및 경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토록 하여 자율적인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지배구조 형태를 제시하되, 기업이 자신에게 맞는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기업 특성상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핵심원칙 10개, 세부원칙 28개)

우리나라는 2017년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로 최초 도입된 이후 2019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하였고, 2022년부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된 바 있다.

* '22년말 점검 결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이 전년 63.5%에서 66.7%로 상당폭 개선 →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일정] ('19) 자산 2조원 이상 → ('22) 1조원 이상 → ('24) 5천억원 이상 → ('26) 코스피 전체

한국거래소는 공시 과정에서 기업간 비교가능하고 충실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19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 지배구조 핵심원칙과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2020년, 2022년 두 차례 개정하였다.

2.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2024년 의무공시 대상 기업 확대에 맞춰,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24년부터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기업이 새로이 의무공시 대상 기업으로 진입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사전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조속히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 등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고, G20/OECD 지배구조원칙(2023년 개정) 및 한국 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2022년 개정시행) 등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의 개정 동향을 참조하였으며, 그 외 시장 참가자의 요구와 기업의 실무적인 개정 수요, 보고서 체계 개편 등을 반영하였다.

① 배당절차 개선방안('23.1월) 후속조치로서,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였는지 공시토록 하였다.

② 최근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경영진이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여부 및 영문공시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③ 자본조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된 사례를 감안하여,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토록 하고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공시하도록 하였다.

④ 이사회 내 다양성을 강조하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 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성(性)·연령·경력이 조화를 이룬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설명토록 하였다.

⑤ 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의 노력이 보수 결정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는지,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는지를 공시토록 하였다.

⑥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등 책임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 범위는 확대*하되, 무기한 공시하도록 하였던 공시 기한**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기존) 횡령·배임, 불공정거래(자본시장법) → (개정) 사익편취·부당지원(공정거래법), 회계처리기준 위반(외부감사법)까지 확대

** (기존) 확정판결부턴~무기한 → (개정) 당국 판단시부턴~형 집행 종료(면제) 후 5년까지만 공시

3. 점검체계 개편 계획 및 향후 일정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지배구조점검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매년초 중점점검항목 및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하여, 기업이 보고서 작성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류사항을 신속하게 점검하여 조기에 정정토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부실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기업명 및 세부 내용 공개도 추진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2023년 실적을 기반으로 2024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제출시한 : 2024년 5월말). 한국거래소에서는 보고서 제출의무법인을 대상으로 10월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5차례 실시하는 등 사전교육을 시행하여 기업의 이해를 돕는 한편 개정사항에 맞춰 충실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80)
		담당자	사무관	김영대 (02-2100-2681)
<공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ESG지원부	책임자	부 장	윤재숙 (02-3774-4500)
		담당자	팀 장	이연숙 (02-3774-4510)



참고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개요

- **(도입)** ‘17.3월, 거래소는 시장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
 - * 주주의 권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
- 상장법인은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배구조보고서를 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시
 - * 최근 거래소 규정 개정(21.12월)으로 결산월에 따라 상이했던 보고서 제출기한을 일원화(종전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부터 2개월 이내 → 개선 : “매년 5월 31일까지”)
-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Comply)여부와 미준수시 그 사유에 대해 설명(Explain)하는 방식으로 공시
 - *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와 관련하여 한국ESG기준원의 모범규준,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에서 제시한 10가지 주요 원칙
- **(의무화)** ‘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 → ‘2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 자산 총액 기준으로 의무대상 기업 단계적 확대 추진 : (‘19년) 2조원 이상 → (‘22년) 1조원 이상 → (‘24년) 5천억원 이상 → (‘26년) 코스피 전체 상장사
- 거래소는 ‘19.4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핵심원칙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
 - *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제시할 수 있고, 상장법인은 충실히 기재하여 신고해야 함(거래소 유가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
- **(제재)** ①기한 미준수 ②허위공시 ③공시항목 오기재·누락에 대한 정정공시 요구* 불응 → 공시불이행 벌점 제재**
 -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잘못 기재되거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고 신고된 경우 거래소는 정정신고 요구가능
 - ** 공시불이행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제재가 가능하며, 벌점 수준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10점 이상), 관리종목 지정(15점 이상) 등의 후속조치 가능

참고2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

1. 세부원칙 관련

구분	주요 개정내용	원칙 번호
① 배당예측 가능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당 관련 표준정관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여부 현금배당 관련 배당액 예측가능성 제공여부 추가 	1-4
②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내역, 해외투자자 소통 위한 행사,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확대 등 신설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안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노력 및 그 내용을 공시 	1-2 1-4 2-1
③ 메자닌채권 등을 통한 자금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현황 * CB, BW, EB 등 주식 전환가능채권, 조건부 자본증권 등 조달과정에서의 주주의견 수렴정책 공시 의무화 	2-3
④ 이사회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뿐 아니라 연령, 경력 등으로 다양성 확대 이사회 내 동일 성별 구성여부 및 미준수시 사유 기술 	4-2
⑤ 보수정책 및 임원배상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 개별평가에 연동한 보수정책 마련 여부 보수 관련 정책의 공개 여부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남용방지 정책 공시 	7-1
⑥ 부적격임원 선임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익편취/부당지원, 회계처리기준 위반까지 확대 1차적인 당국의 판단 (기소 및 행정처분)을 기점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까지 공시 	4-4

2. 핵심지표 관련

신설항목	삭제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1회 이상 교육 제공

* 법령 개정으로 의미가 없어지거나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하고, 정책 개편 및 글로벌 추세 등을 반영하도록 일부 핵심 지표를 정비

<상세 내용>

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배당절차 개선

- '23.1월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가 개선되었으며,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상장회사 표준정관'도 개정됨
- 상장기업이 변경된 표준정관을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했는지, 실제 배당시 '선(先)배당액 결정, 후(後)배당기산일'의 배당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공시하도록 의무화

② 소액주주·해외투자자 소통 강화

- 최근 소액주주, 해외투자자의 주주제안, 공개서한 발송 등 적극적인 경영관여활동이 증가하면서 기업이 주요 경영현안에 대해 주주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성 증가
- 경영진이 소액주주, 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을 공시하고,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 채널을 마련했는지 설명하도록 요구

③ 메자닌채권을 이용한 자본조달시 주주권리 보호

- 일부 기업이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되거나 지배권 방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하고 이사회 의사결정과정 등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공시하도록 개정

④ 이사회 내 다양성 확보

-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개정과정에서 성(性)·연령·경험·능력 등의 조화를 이룬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 * (국내) '21년 자산 2조원이상 상장기업의 이사회내 성(性) 다양성 확보가 법제화
- 성(性) 뿐 아니라 연령·경력 등으로 다양성 범위를 확대하고 이사회 내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설명하도록 함

⑤ 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 지원

- 회사의 재무적 성과 등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이사의 노력을 적절히 평가·보상하고, 경영판단에 대한 책임 강화추세에 맞춰 이사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필요
- 이사의 보수 결정시 실적평가를 반영하는지, 보수 결정방식이 기업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되는지 밝히고
- 이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는지 공시하도록 관련항목을 신설

⑥ 기업가치 훼손 등 책임있는 자의 임원선임 방지

- 현행 기업가치 훼손 등 범위*가 시장 컨센서스 대비 협소한 반면, 공시기한의 일몰조항이 부재한 점은 유사제도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

*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부당지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되, 공시기한은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5년까지 합리적으로 조정

참고3

보고서 형식체계 개편 (예시 : 세부원칙 1-4)

□ (개정 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항목을 단순 기술하는 방식

(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ii) 주주환원정책 등을 주주에게 안내하는 방식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

□ (개정 후) 원칙 '준수여부'(간략 기술) 및 정책 시행여부(○/× 기재)를 별도 항목으로 공시

[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자 이내)

가.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²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²²⁾ 수립 여부

시행 여부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 지 여부

연 1 회 통지²³⁾ 여부²⁴⁾

영문자료 제공 여부

- * **준수여부** : 기업 스스로 준수여부 공시 요구, 세부원칙 준수여부를 '준수/미준수' 등 이분법적 공시보다는 기업의 판단을 간략하게 기술(100자 이내) 방식으로 반영
- * **정책 시행 여부** : 세부원칙 준수판단 근거가 되는 '주요 지배구조정책(제도) 채택여부 등 (Fact중심)'을 ○/×로 공시하도록 관련항목 신설(XBRL 개발에 따라 자동 DB화 가능)